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224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미경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김재환, 배민규, 신영경, 이기웅, 이준호, 정유진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7. 3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주식회사 E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8415호로 부당이득금 99,746,95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1. ‘D은 원고에게 99,74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1. 5.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D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나5935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2. 8. 26.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은 원고에게 99,74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4.부터 2022. 8.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2. 9. 17. 확정되었다.

다. D은 별지 채권양도양수서 기재와 같이 2021. 7. 30. 피고들에게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21. 8. 2.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합106199호로 이 사건 양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진행 중에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들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21. 12. 2. ‘E는 피고들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19,746,957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 채권액을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는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우선, D이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D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거제시 F 임야 1,487㎡ 중 133/1487 지분 및 이 사건 양도채권이 있었던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시가는 670만 원 정도인 사실, D은 2021. 9. 27. G에게 위 F 임야 1,487㎡ 중 133/1487 지분을 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양도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게다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56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이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받은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H, I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339 투자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2. 6. 15. ‘주식회사 H은 D에게 5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I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D이 주식회사 K의 연대보증인 L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3107 보증금채무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1. 5. 12. ‘L은 D에게 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D은 M와 함께 2018. 6. 19. 주식회사 J와 사이에 ‘D과 M가 20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J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D은 주식회사 J에게 2018. 6. 20. 2억 5,000만 원, 2018. 6. 21. 5억 원 및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D의 주식회사 H이나 I에 대한 채권은 2018. 12.경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 D의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채권 역시 그 변제기가 2019.경 또는 2018.경 도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채권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패소 위험을 무릅쓰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받은 점, 피고들을 비롯한 D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피고들이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뒤 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자단에 속하는 채권자들끼리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받기로 정하였고, 피고 C은 D의 채권자인 M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피고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받은 점, 이 사건 처분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D의 소극재산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자단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와 같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D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1) 이 사건 처분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로서는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한 D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피고들이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뒤 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자단에 속하는 채권자들끼리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받기로 정하였고, 피고 C은 D의 채권자인 M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피고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받은 점, 이 사건 처분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D의 소극재산도 함께 감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의 위 주장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때 수익자 등이 변제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양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제3채무자인 E에게 이 사건 양도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별지

목 록

소외 []이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20. 3. 3.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기한 대여금 반환채권

2/3

【 채 권 양 도 양 수 서 】

*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양수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성명:
주민등록번호:

* 채권의 내용 : 2021년 4월 3일자 채권합의서에 준하여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2020년 3월 3일자 금전소비대차에 의거하여 (주) 로부터 받을 채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 특약사항

1. 양도인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절차는 양수인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양수인은 사건번호 2020가합 106199를 소송 수계 신청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2. 채권의 양도양수 내용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3. 민사소송 채권은 양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4. 이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 35프로 지분은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 가지고 있으며 위 대어금을 지급받을시 (주) 로 돌려주기로 한다.

* 첨부자료

1. (주) : 금전소비대차, 인감증명
2. 양도인: 인감증명

2021년 7월 30일

양도인 :
양수인 :
양수인 :

금전소비대차

[] (이하 "갑")과 (주) [] (이하 "을")는 대여한 일금오역원정(₩500,000,000)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대여금액 및 내용

해 []가 시행하는 [] 오피스텔 개발사업(소재 : 부산시 기장군 [])에 해 []와 []가 대여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2017년 11월 28일 (주) [] -> (주) [] 어역원(₩200,000,000)정
- 2) 2017년 11월 29일 [] -> (주) [] 일역원(₩100,000,000)정
- 3) 2018년 03월 12일 [] -> [] 일역원(₩100,000,000)정
- 4) 2018년 02월 12일 [] -> [] 이천만원(₩20,000,000)
- 5) 2018년 10월 02일 [] -> (주) [] 삼천만원(₩30,000,000)
- 6) 2018년 10월 30일 [] -> (주) [] 오천만원(₩50,000,000) 등

합계 일금오역원정 (₩500,000,000)이며, 이 중 1), 2)항 삼역원은 [] 오피스텔사업지 관련한 대여금이며, 5), 6)항 팔천만원원은 [] 오피스텔 사업지 토지대상에 대한 이차비용으로 대여하였으며, 4)항 이천만원원은 설계비로 차용 요청하여 대여하였으며, 총 일금액 중 3), 4)항 일억이천만원원은 []의 계좌로 일금하였으나 총액 오역원정에 대하여 해 []가 모두 차입하였음을 인정한다.

2. 정산방법

1) 사업 진행 시 우선순위(현재 7순위)를 제외한 시행사 측의 권리로 수익금이나 재산권이나 상환금이 "을"이 지급받거나 보전받을 시 "갑"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전할 것을 확인한다.

2) 사용자인 해 []에서 하도급공사나 분양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을" 법인으로 금원이 입금 될 시에 "을"은 "갑"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수익률은 각 대여일로부터 월4%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분공후 1개월 까지로 하며 미정산 금액을 일괄 정산한다.

3. 특약사항

1) 2층 상가 본양계약 후 8순위 우선수익증서를 교부하기로 하며, 우선수익금액은 최소 10억원으로 하기로 한다. 단 수익권증서가 교부되면 2020년 3월 3일 작성한 금원소비대차 서약을 ^{인수}판납시 폐기하기로 한다.

2) 대역금 및 내용에 외거하여 입금은 [] , [] 로 하였으나 실입금자는 [] 외 2명이고 우선수익증서는 "갑"이 지정하는 [] [] 로 하기로 한다

첨 부 : 법인인감증명서 1통

2020년 3월 3일

"갑" [] [] []
부산시 부산진구 [] 호

"을" (주) [] []
부산시 수영구 [] 10층
전 대표이사 [] [] 후 대표이사 [] []